

의안번호	2201413
의 퇴 인	한병도 의원
회 답 일	2024. 7. 15.
추 계 번 호	24F171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법인·소득세, 관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할 경우, 세수는 2025년 1.9억원, 2037년 1.0억원 등 2025년부터 2037년까지 13년간 총 56.7억원(연평균 4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시 법인·소득세는 2026년부터 2037년까지 12년간 총 51.0억원(연평균 4.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－ 현행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은 최대 10년(7년간 100%, 이후 3년간 50%) 동안 적용되어, 2027년에 국내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수효과는 최대 2037년까지 발생할 수 있음
 -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시 관세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5.7억원(연평균 1.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·소득세, 관세

(단위: 억원)

	'25	'26	'27	'28	'29	'30	'31	'32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104조의24)		-2.0	-4.0	-6.0	-6.0	-6.0	-6.0	-6.0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118조의2)	-1.9	-1.9	-1.9					
합계	-1.9	-3.9	-5.9	-6.0	-6.0	-6.0	-6.0	-6.0

	'33	'34	'35	'36	'37	누적	연평균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104조의24)	-5.0	-4.0	-3.0	-2.0	-1.0	-51.0	-4.3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118조의2)						-5.7	-1.9
합계	-5.0	-4.0	-3.0	-2.0	-1.0	-56.7	-4.4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4조의24 (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)	○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- 감면율: (완전복귀·수도권 밖부분복귀) 7년 100% + 3년 50% (수도권 내 부분복귀) 3년 100% + 2년 50%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
2	안 제118조의2 (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)	○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- 감면대상: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·증설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- 감면율: (완전복귀·수도권 밖부분복귀) 100% (수도권 내 부분복귀) 50%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04조의24 (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)	○	
2	안 제118조의2 (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(법인·소득세 감면)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시 다음과 같이 가정

-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액은 「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상

2023년 감면액 전망치¹⁾가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고, 해당 금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추계

-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실적은 과거 7년(5년 100% 감면, 2년 50% 감면)간 국내 복귀기업에 적용된 조세지출액의 합계액이므로 이를 1년 단위로 환산 후 배분
 - 향후 국내복귀기업은 모두 완전 복귀 또는 수도권 외 부분 복귀하고, 국내 복귀한 해부터 소득이 발생하여 세수효과는 이전 후 10년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 - 현행 완전 복귀 또는 수도권 외 부분 복귀 기업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은 7년간 100%, 이후 3년간 50%가 적용
 - 2023년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에 따라 감면 적용 대상 업종요건이 변경되었으나, 세수효과 추계 시 업종요건 변경에 따른 추가 감면은 반영하지 않음
 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6년 이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- (관세 감면)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시 다음과 같이 가정
-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액은 조세지출예산서상 최근 5년간 (2019~2023년(전망)) 연평균 감면액 수준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
 - 2023년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에 따라 감면 적용 대상 업종요건이 변경되었으나, 세수효과 추계 시 업종요건 변경에 따른 추가 감면은 반영하지 않음
 - 향후 국내복귀기업은 모두 완전 복귀 또는 수도권 외 부분 복귀하는 것으로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104조의24)

(1) 추계방법

□ (감면실적) 조세지출예산서상 2023년 기준 법인·소득세 감면액(전망)은 총 12억원 수준

1) 「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상 2023년 감면액 숫자는 2023년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을 바탕으로 이전 연도의 진도비를 적용하여 추정된 숫자임

- 최근 감면실적을 고려하여 향후 소득세 감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

[표 2]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실적: 2019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(전망) ¹⁾
계	8	1.6	3	8	12
법인세	8	1.6	3	8	12
소득세	0.1	0	0	0	0

주: 1) 「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상 2023년 감면액 숫자는 2023년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을 바탕으로 이전 연도의 진도비를 적용하여 추정한 숫자임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추계방법) 「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상 2023년 감면액(전망)을 바탕으로 해당 금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세수효과 추계

- (법인세) 1년 단위 환산액: 50% 감면액 1.0억원* + 100% 감면액 2.0억원**

* 1억원 = 12억원 ÷ 12 (5년 × 2 + 2년)

** 2억원 = 1억원 × 2

- (2025년 국내복귀기업) 7년(2026~2032년) 100% + 3년(2033~2035년) 50% 감면
(2026년 국내복귀기업) 7년(2027~2033년) 100% + 3년(2034~2036년) 50% 감면
(2027년 국내복귀기업) 7년(2028~2034년) 100% + 3년(2035~2037년) 50% 감면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감면액 추정: 법인·소득세, 2026~2037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2025년 국내복귀기업	2.0	2.0	2.0	2.0	2.0	2.0
2026년 국내복귀기업	—	2.0	2.0	2.0	2.0	2.0
2027년 국내복귀기업	—	—	2.0	2.0	2.0	2.0
계	2.0	4.0	6.0	6.0	6.0	6.0

구분	2032	2033	2034	2035	2036	2037
2025년 국내복귀기업	2.0	1.0	1.0	1.0	—	—
2026년 국내복귀기업	2.0	2.0	1.0	1.0	1.0	—
2027년 국내복귀기업	2.0	2.0	2.0	1.0	1.0	1.0
계	6.0	5.0	4.0	3.0	2.0	1.0

(2) 추계결과

-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
시 법인·소득세는 2026년부터 2037년까지 12년간 총 51억원(연평균 4.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현행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은 최대 10년(7년간 100%, 이후 3년간 50%) 동안 적용되어, 2027년에 국내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 수효과는 최대 2037년까지 발생할 수 있음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·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'26	'27	'28	'29	'30	'31	'32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(안 104조의24)	-2.0	-4.0	-6.0	-6.0	-6.0	-6.0	-6.0
	'33	'34	'35	'36	'37	누적	연평균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(안 104조의24)	-5.0	-4.0	-3.0	-2.0	-1.0	-51.0	-4.3

나.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118조의2)

(1) 추계방법

- (감면실적) 조세지출예산서상 최근 5년(2019~2023년(전망)) 연평균 감면액은 1.9억원 수준

[표 5]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실적: 2019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(전망) ¹⁾	'19~'23(전망) 연평균 감면액
관세	1	0.3	7	0.2	1	1.9

주: 1) 「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상 2023년 감면액 숫자는 2023년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을 바탕으로 이전 연도의 진도비를 적용하여 추정한 숫자임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추계방법) 조세지출예산서상 최근 5년간(2019~2023년(전망)) 연평균 감면액 수준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세수효과 추계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감면액 추정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
관세	1.9	1.9	1.9

(2) 추계결과

-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시 관세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5.7억원(연평균 1.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관세

(단위: 억원)

	'25	'26	'27	누적	연평균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118조의2)	-1.9	-1.9	-1.9	-5.7	-1.9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고은비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고은비	02-6788-4839	eunbi15@assembly.go.kr